

◎ 학교폭력 사안 처리 - '2024 2025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일부 발췌

01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 상황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유의사항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단, 단위학교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에 따라 운영)

I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요

02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단위학교 관계회복프로그램, 화해중재를 적극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통한 관련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한다. 단,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03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단계	학교에서 해야할 일	비고
학교폭력 인지	117 신고센터, 교사·학생·보호자를 통한 인지 및 신고접수	
학교폭력 접수 및 사실 확인	- 접수 / 초기대응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 작성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학생의 소속교가 다른 경우, 먼저 인지한 학교에서 상대학교에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긴급조치 필수 - 사안접수 보고서 교육지원청 보고(48시간 이내)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관련학생·신고 및 고발학생 안전 조치 - 성범죄인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 연계 - 심의위원회 이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피해학생 제1호, 2호, 3호, 6호 조치), (가해학생 1호, 3호, 5호, 6호, 7호 조치)	법률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 의견 청취 필수(거부하여도 조치실시 가능)
사안조사 제로센터 (조사관) 자체조사 시 (전담기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 조사 실시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 확인 및 안내 - 추가로 발견된 피해 사실 및 쟁점에 대해 피·가해학생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요청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법률 13조의2제1항 제1호~4호에 모두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전담기구 심의 결과보고서 작성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단위학교 관계회복프로그램 및 화해중재 안내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개괄

근거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무고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부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 화상 · 음성 등을 촬영 · 녹화 · 녹음 ·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4)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유의점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교원지위법」은 형법 등 형사처벌 조항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로 형사상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III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방안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 [학교]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 필요시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 사안 신고(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 사안 신고서 접수(피해교원→학교) •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안내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 상담 지원 -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 침해행위 중단 요청 • 주변에 도움 요청 •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 · 담당자에게 신고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서식2]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서식1] 사안 신고서
	사안 발생 보고 [학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사안 발생 보고(5일 이내, 주말·공휴일 불포함, 학교→교육지원청) -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 제출(공문)	•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서식3] 침해 관련자 의견서 [서식4] 참고인 진술서 [서식6] 사안 발생보고서
공정한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 중대사안 발생 보고(교육지원청→도교육청) • 사안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의 관련 자료 조사 - 쟁점사안 확인·점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 추가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서식8] 중대사안 보고서 [서식9] 사안 조사보고서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교육지원청]	• 안건 상정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21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신청한 경우 분쟁조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심의 • 침해 학생, 침해 보호자 등 에 대한 조치 의결 •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 회의록 작성	• 사실관계 진술 • 서면진술 가능	[서식10, 10-1] 출석통지서 및 서면의견서 [서식11] 회의록 [서식12] 조치 의결서
	사안 종결 [교육지원청, 학교]	• 심의 결과 통지(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 결과 보고(교육지원청→도교육청) •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 불복절차 안내·지원	• 피해 회복 및 치유	[서식13-1, 13-2, 13-3, 13-4] 결과통지서 [서식14] 결과보고서